

한림대학교 산학현장실습

2020학년도 동계



한림대학교 산학현장실습

학생에게는 실무역량 강화와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훈련의 기회를,
참여기관에는 우수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산학현장실습 참여 가능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
- **제외대상**: 단순 노무직종(텔레마케팅, 경비, 건물관리, 홀서빙, 재택근무, 단순 제조 및 생산 등), 영업 및 판매 전담업무 등

한림대학교 산학현장실습 운영기준 (교육부 지침 및 대학 지침에 따른 기준 준수)

주요사항	비 고
현장실습 근무기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근무	법정공휴일 출석 불인정 추가, 연장근무는 관련 법령 범위 준수 및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원금 지급 시 실습생과 협의 하에 가능
근무일수(현장실습 이수기준): 8주 40일	8주 근무일수(40일)에는 월차휴가 1일이 포함됨
8주 참여자는 4주 만근 후 월차휴가 1일 활용 가능	
법정공휴일 외 기관의 자체 휴무 발생 시 대학에 사전 안내 (부족한 근무일수는 실습기간을 연장하여 준수해야 함)	근무일수 미달 시 실습생 학점 및 지원금 지급 불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산재보험법 제 123조)	산재보험 외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습생과 협의 하에 근무시작일 조정 가능	대학과 사전논의 후 조정
기관의 주차별 운영계획은 세부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관련 법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6조, 제7조, 제15조)	홈페이지 참여 신청 시 자세한 업무내용 기재 요망

한림대학교 현장실습생 지원 사항

- 참여대상: 한림대학교 3 ~ 4학년 재학생
- 현장실습 이수 시 지원금(기관, 대학)과 학점 · 계절수업료(대학) 지원

구 분			기관 → 학생	대학 → 학생	
			지원금(교육부 관련 기준 제7조)	지원금	학점
국내	단기	8주	수업요건을 갖춘 경우: 총 600,000원 이상 권장 (*4주 기준 300,000원 이상)	총 1,000,000원 이상	최대 6학점

- 수업요건을 갖춘 실습: 전공과 관련된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제공
(실습과정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실질적 근로 대상 여부는 참가 승인 전 기관이 작성한 참여 신청서를 토대로 대학에서 검토 및 기관별 안내함

2020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프로그램 시행 절차 및 일정

순번	구분	내용	주체	일정
1	실습기관 신청	한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참여신청 (*자세한 업무내용 기재 요망)	기관	2020.9.28.(월)~10.23.(금)
	신청확인 및 승인	기관 신청서의 업무내용 및 신청사항 확인 후 승인처리	대학	
2	참여학생 모집	기관 신청사항 확인 후 희망기관에 지원	학생	2020.10.26.(월)~11.4.(수)
3	서류심사 및 면접	신청사항에 따라 기관, 대학(센터) 면접선발 (*기관 면접선발 권장)	기관 대학	기관: 2020.11.9.(월)~11.13.(금)
4	현장실습 시행	기관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 시행 (*시행기간은 2020.12.28.(월) ~ 2.26.(금) 내에서 조정 가능, 학교와 사전논의 필요)	기관	8주: 2020.12.28.(월)~2021.2.24.(수) *법정공휴일 3일(1.1, 2.11~12)에 따른 3일 추가
5	기관방문	지도교수 및 담당직원 기관 방문	대학	실습시작 2주 후부터
6	실습 종료	현장실습 종료에 따른 출석부 및 평가서 등록	기관	종료 후 3일 내
		이수자에 대한 지원 사항(지원금 등) 지급	기관	기관: 4주마다 지급(지원금)
			대학	대학: 종료 후 일괄 지급

※안내된 프로그램 외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경우 센터로 문의

한림대학교 산학현장실습 참여학과(전공) 현황

단과대학	학과(전공)	단과대학	학과(전공)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사학전공, 철학전공)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영어영문학과		생명과학과
	중국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일본학과		식품영양학과
	러시아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언어청각학부(언어병리학전공, 청각학전공)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글로벌 융합대학	체육학과
	사회학과		글로벌학부(글로벌비즈니스전공, 정보법과학전공, 문화산업전공, 한국학전공)
	사회복지학부		융합인재학부(의과학융합전공)
	정치행정학과	미디어스쿨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광고홍보학과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법학과	데이터과학 융합스쿨	임상의학통계전공, 데이터테크전공, 디지털금융정보전공
	경제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나노융합스쿨	반도체전공, 디스플레이전공
	금융재무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빅데이터전공, 콘텐츠IT전공, 스마트IoT전공
미래융합스쿨		ICT융합전공,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한류크리에이터공공외교융합전공, 융합관광경영전공, 의약신소재공학전공, 융합신소재공학전공	
산학협력특성화대학		헬스케어진단전공, 사회혁신경영전공, 건강돌봄디자인전공	

 산학현장실습 프로그램


- Q** 8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1일 휴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기업에서 학생에게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나요?
- A** 한림대학교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근거하여, 8주 현장실습생에게 5주~8주차(4주 만근 후)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8주 현장실습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학생과 일자를 협의하여 학생에게 부여된 1일의 휴가를 활용해야 하며, 이는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8주 현장실습프로그램 이수 기준(40일) 계산식: 실근무일수 39일 + 월차휴가 1일)
- Q** 8주의 현장실습 기간 중 월차휴가 1일 외 추가로 1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8주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 A** 불가합니다. 산학현장실습은 학생이 실제 실습을 시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이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및 법정공휴일 외 기관의 자체 휴무 발생 시 휴무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추가 근무가 필요합니다.
(산학현장실습 이수 기준: 8주-40일)
- Q** 기관에서 꼭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나요?
- A**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에 따라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기관에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방법을 확인하시어 꼭 가입하신 후 대학에 가입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관련 Q&A”를 참조
- Q** 현장실습프로그램 신청 시 기재한 현장실습생에 대한 기관지원금을 기관 사정상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원할 수 있나요?
- A** 산학현장실습 진행 시 학교-기관-학생은 3자 협약(연수협약서)을 통해 기관지원금의 지급액과 지원 방법을 확정하며, 이는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시 작성된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및 연수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승인과 진행이 이루어지므로, 학교 및 학생과 협의되지 않은 기관의 지원금 지급 불이행과 축소 지원은 불가합니다.
- Q** 현장실습생 선발 후, 현장실습생을 교육하고 관리할 담당자가 퇴사하여 담당자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현장실습생 관리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현장실습 진행이 가능한가요?
- A** 불가합니다. 본교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실습학기제로 운영되며, 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습 진행 및 이수가 불가합니다. 기관 내 현장실습생 담당자가 없는 경우는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습에 해당하므로 담당자가 공석이 된 경우 즉시 대학에 관련 사실을 전달해야 하며, 신규 담당자 지정 시에만 현장실습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관 내 근무자 수가 현장실습생보다 적은 경우도 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위배되므로 참여 신청 시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업무 특성상 특정 기간에 한하여 의도치 않은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학생에게 정해진 현장실습 시간 외 추가 근무(야근 및 주말 근무)를 요청할 수 있나요?
- A** 현장실습생에 대한 추가 근무는 실습생의 동의하에 1주 5시간 이내로 인정하되 지양하며, 야간실습(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운영은 불가합니다. 현장실습생이 추가 근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근무 시행 시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및 연수협약서에 기재된 지원금과 별개로 추가 근무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실습의 경우에도 실습생이 동의하지 않은 추가 근무는 시행할 수 없으며, 실습생이 동의한 경우 추가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관 업무 특성 상 주말 근무를 진행하는 경우 주차별 운영계획 및 안내사항에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